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우형찬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차고지 밖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충분한 증거자료와 포상금만을 노린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로 청문절차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행정처분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